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115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17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17년 10월 24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청소년시설 감면대상에 일부 계층이 누락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감면대상 자격기준을 종전 “수급권자”에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안 제8조제2항제1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예산조치 :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36백만원)
- 다. 입법예고(2017.6.29.~7.19.)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이하 '현행 대상자')'에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이하 '개정 후 대상자')'까지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text{근로소득} - 60\text{만원}) + \text{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 \text{재산의 소득환산률}(\text{연}4\%) + \text{고급자동차}(3000\text{cc이상}, 4000\text{만원이상}) + \text{회원권 등}$

-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2017년 중위소득 기준([시행 2017.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7.22., 제정])

금액(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차상위계층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 청소년시설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각 법률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15~55세의 가임여성은 100분의 10을, 다동이 행복카드(카드 전면에 '자녀수 3' 이상 표기) 소지 청소년은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있음.

**※ 각 법률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청소년 ( 본 조례 제8조 제2항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 평생교육국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465명정도가 4천5백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신분이나 청소년시설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과 19~24세 청소년에게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복지사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개정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대상자는 기초생활 급여인 생계(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 의료(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 주거(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 교육(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하는 청소년 또는 가족 중에 급여를 수급하는 청소년이나, 교육급여의 범위와 차상위 계층의 범위(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와 일치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자의 자격기준 비교 >**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차상위 계층의 기준
·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중위소득의 100의 50 이하

< 지원대상 확대추이 및 재정추계 >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원명수	2,325	490	477	465	453	440
감면액	223,000	47,000	46,000	45,000	43,000	42,000
감면보전액 (시 보조금)	170,000	36,000	35,000	34,000	33,000	32,000

○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의 범위일치로, 학교에 다니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차상위 계층의 가족을 둔 청소년들에게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의 감면대상의 범위는 ① 중위소득의 44%~50% 범위에 있는 ②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19세 초과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를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교육급여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 급여의 수급자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함.

※ 학교 밖 청소년 및 19~24세 청소년의 경우,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3% 이하)의 대상기준의 밖이나,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교육급여의 수급자격은 갖고 있으면서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 아닌 자는 교육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즉, 같은 소득수준이고, 같은 나이 때의 청소년이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아 청소년시설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현행	개정(안)
대상	수급자 청소년, 수급자가족의 청소년 · 급여의 기준 생계급여(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의 대상자(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제외)	· 수급자 청소년, 수급자 가족의 청소년 · 차상위계층 청소년 · 차상위계층 가족의 청소년 - 주거급여는 수급하나,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과 19세 초과~24세 이하 청소년이 추가됨.

- 조례 제10조<sup>1)</sup>는 운영에 대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거나, 수련관의 위·수탁협약서 제12조 제3항<sup>2)</sup>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서울시는 사용료 감면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조례의 임의규정을 민간 위탁기관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원부담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립청소년시설 청소년 수련관은 2016년 한 해동안 본 조례 제8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령)에 따라 2,661여 명의 대상자들에게 2억 7천 8백만원의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최근 5년간 52억1천만원을 감면대상자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였으나, 서울시는 약 3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66.1%의 보전율을 보이고 있음.

---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광진·보라매·창동수련관 등의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제3항 발췌  
 제12조(사용료 등) ③ “0000000(수탁법인명)”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감면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감 면 액					보전금	미보전액	보전율
	계	저소득 (8조2항)	가임여성 (8조5항)	다둥이 (8조6항)	대관료 (8조7항)			
5년 합계	5,211,484	3,040,878	1,362,951	806,432	1,222	3,446,380	1,765,104	66.1%
5년 평균	1,042,297	608,176	272,590	161,286	1,222	689,276	353,021	66.1%
2016	1,087,116	618,623	278,058	189,213	1,222	836,439	250,677	76.9%
2015	1,066,251	622,407	267,195	176,648	-	946,131	120,120	88.7%
2014	1,107,348	662,626	285,366	159,356	-	663,810	443,538	59.9%
2013	1,002,464	581,407	270,123	150,934	-	600,000	402,464	59.9%
2012	948,305	555,815	262,209	130,281	-	400,000	548,305	42.2%

출처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청소년 수련관은 재정적인 원인으로 기형적인 인사·채용관리 부적정 (정규직과소, 비정규직 과다), 시설관리 및 개선 미흡, 계약 부적정, 불법 기부금품 모집 등 청소년활동보다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
-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목표 제시, 지도·관리감독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적정한 보조금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에서 정한 감면금액의 보전 등에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